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 2016년 10월 31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6년 11월 29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 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6.10.31)

##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 97724]

### 투자 위험 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하나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02-3771-7800)

###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1좌단위 모집)

### 효력발생일

2016년 11월 29일

###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종류(Class)

#### A

#### C1

#### C-E

### 가입자격

가입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선취)

-

-

###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보수

### 운용

0.600

0.600

0.600



(연, %)	판매	0.600	1.500	1.000
	신탁업자	0.050	0.050	0.050
	일반사무	0.020	0.020	0.020
	기타비용	0.027	0.025	0.027
	합성총보수·비용	2.297	3.195	2.697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ass C2~C4, S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판매, 운용,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는 3개월 후급, 기타보수는 사유발생시 지급</li> <li>수익자는 증권 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li> <li>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합성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을 말합니다.</li> </ul>			
매입 방법	· 17시 이전 : 제2영업일 ·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8영업일 지급</li> <li>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li> </ul>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li> <li>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li> <li>-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li> </ul> </li> </ul>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명	투자목적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u>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u>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중국 본토시장의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2)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 비율
-------	-------



하나UBS슈퍼차이나A Share ETF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유동성자산	10% 이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

**CSI300 지수**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중국의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 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 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 을 기준으로 하여 1,000 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수준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전략
하나UBS슈퍼차이나A Share ETF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본토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li> <li>- 중국 본토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주식 지수ETF에 투자하며, 추가적인 수익추구를 위해 유망 중국 본토주식 업종 ETF등에 투자합니다.</li> </ul>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수범	1985	과장	12개	1,433억원	- 연세대 경영학과 - 해외조사 및 분석 5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3/11/11~ 2014/11/10	2012/11/11~ 2013/11/10	2011/11/11~ 2012/11/10	2010/11/11~ 2011/11/10	2009/11/11~ 2010/11/10
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주식-재간접형]	2010-11-11	3.37	-1.10	-14.37	-20.96	
비교지수	2010-11-11	10.39	3.19	-15.02	-20.42	
ClassA	2010-11-11	3.49	-0.92	-14.08	-20.64	

주1) 비교지수: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

주2) 종류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 일반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 각종 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이하 총칭 “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증권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자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b>환율변동에 따른 위험</b>	<p>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 또한 시장상황에 따른 대체통화(USD)를 활용한 헷지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 있습니다.</p> <p>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의 주식 등의 성과를 추종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p> <p>모 투자신탁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본토의 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주로 환위험을 회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추종할 수 있으나 중국본토의 통화와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유통국가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사건 등으로 인하여 환율 관련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p> <p>※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의 경우 대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b>이자율 변동위험</b>	<p>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종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b>신용위험 및 부도 위험</b>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이상(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p>
<b>파생상품투자 위험</b>	<p>파생상품(선물, 옵션에 등에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b>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b>	<p>본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단일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모투자신탁의 수익에 연동되는 위험이 있습니다.</p> <p>또한 모투자신탁의 청산 시 자투자신탁 또한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5.38%**임에 따라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의 위험분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위험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1)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종류 C2, C3, C4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종류로 종류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7724
A	97068
C1	97069
C2	97070
C3	97071
C4	97072
C-E	97073
S	AR231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



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판매,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7724
A	97068
C1	97069
C2	97070
C3	97071
C4	97072
C-E	97073
S	AR23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0년 11월 11일	최초설정일
2010년 11월 30일	- 운용역 변경(김대영 → 이경수)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기준일 변경 - 펀드코드 변경
2011년 7월 11일	- CDSC 인하
2011년 10월 일	운용역 변경 (이경수 -> 정보영)
2012년 5월 16일	재무제표 결산에 의한 정기갱신
2013년 2월 4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HSBC 펀드서비스 → 외환펀드서비스)
2013년 8월 19일	- 자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4년 3월 5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4년 4월 10일	종류형 S 수익증권 신설
2014년 6월 18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조항 신설
2015년 5월 12일	운용역 변경 (정보영-> 박수범) 및 설명서 업데이트
2016년 7월 2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11월 29일	1)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및 위험등급 변경 2)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집합투자업자

##### 가.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수범	1985	과장	12개	1,433억원	- 연세대 경영학과 - 해외조사 및 분석 4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정보영	2011년 10월 17일 ~ 2015년 5월 11일
박수범	2015년 5월 12일 ~ 현재

####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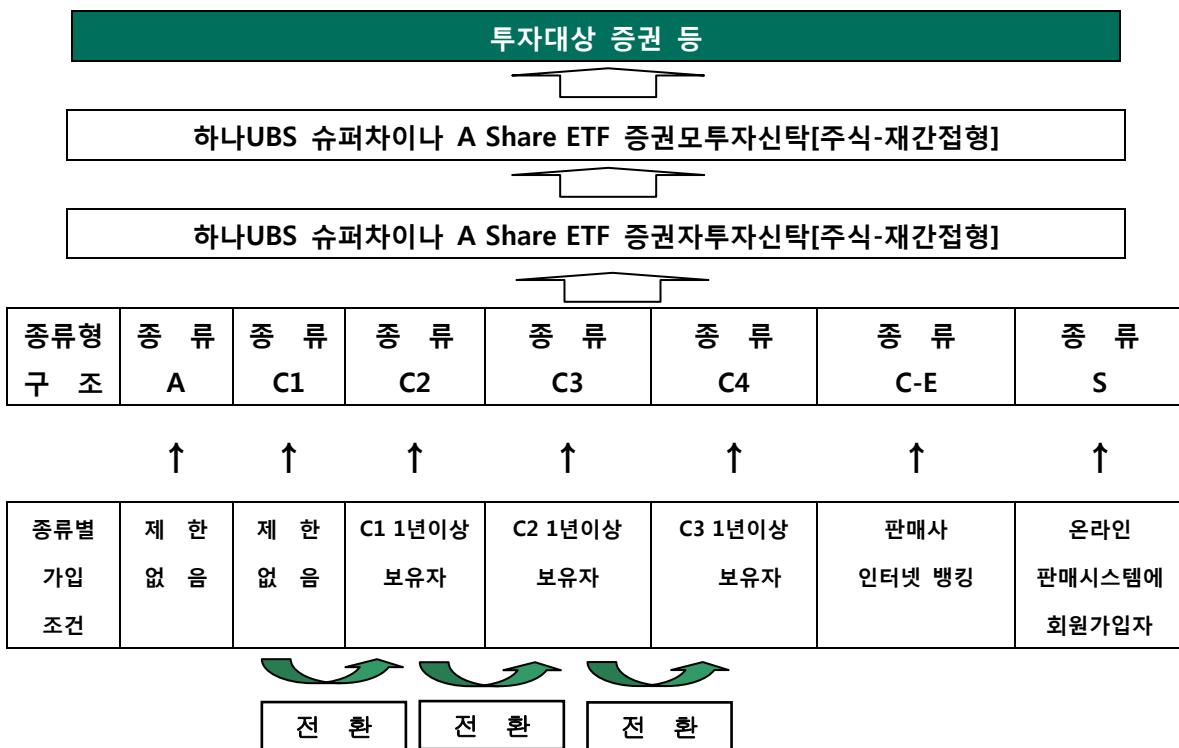
구분	설정일	가입자격
운용개시	2010년 11월 11일	
종류 A	2010년 11월 11일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2010년 11월 11일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2011년 11월 11일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3	2012년 11월 12일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4	2013년 11월 11일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E	2010년 11월 11일	판매사 인터넷뱅킹(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S	2014년 4월 22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3) 종류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4) 종류 C2, C3, C4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종류로 종류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5)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종류 C1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한 종류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이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 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 형]	주요투자대상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투자목적	중국 본토시장의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본토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주식 지수ETF에 투자</li> <li>- 추가적인 수익추구를 위해 유망 중국 본토주식 업종 ETF 등에 투자</li> </ul>	

-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집합투자기 구의 가. 자집합투자기구

### 구의 (1) 투자대상

**투자대상**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u>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u> <u>모투자신탁</u> <u>[주식-재간접형]</u>	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u>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u> <u>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u> <u>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u> 60% 이상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증권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로 하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은 60% 이상)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li>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li></ol></li></ul>	

### (3) 기타 제한 사항

####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1. 소각

#####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나. 모집합투자기구

#####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 등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 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 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3.자산유동화증 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 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 건부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 만 해당)

	<p>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 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b>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b>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 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li> </ul>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함</li> <li>-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
한도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ol> </li> </ul>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li> <li>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li> <li>(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li> <li>(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li> </ul> </li> <li>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li> </ul> </li> </ul>	

	<p>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p>	
--	---	--

## 9. 집합투자기     가. 투자전략

구의 투자전  
략, 위험관  
리 및 수익  
구조

###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3) 비교지수(Benchmark) : (CSI300 지수 \* 90%) + (Call 금리 X 10%)

#### CSI300 지수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LTD)에서 중국의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 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 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 을 기준으로 하여 1,000 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주1) 본 자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나. 위험관리

본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다.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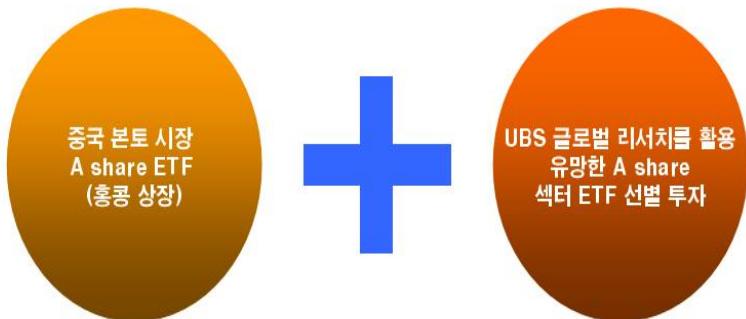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본토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잔여 신탁재산은 국공채 등 안정자산에 투자, 운용하여 실현수익을 방어하고자 함

##### <운용계획>



#####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추구

-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 지수 ETF에 주로 투자
- 추가 수익 추구를 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 섹터 ETF에 투자 가능

\* 위 운용전략 및 투자비중은 예시목적으로 당사의 운용 판단 및 증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Share 투자유니버스>

ETF	설정일	Board Lots	NAV	Market Cap (Mil)	Market Cap (USD Mil.)	기준통화	일일평균거래량		추종지수	상장지역
							Unit	KRW Mil.		
iShares FTSE/Xinhua A50 China Index ETF	2004-11-15	100 units	12.36	56,519	7,293	HKD	111,000,000	205,794	XIN50	HK
db x-trackers CSI300 Index ETF	2010-03-16	300 units	7.24	1,210	156	HKD	22,769,594	24,728	CSI300	HK
W.I.S.E.-CSI 300 china Tracker	2007-07-17	200 units	32.65	6,131	791	HKD	2,194,134	10,746	CSI300	HK
W.I.S.E.-SSE 50 china Tracker	2009-04-15	100 units	20.5	459	59	HKD	521,469	1,604	SSE50	HK
iShares CSI300 A-Share Index ETF	2009-11-18	100 units	26.9	1,328	171	HKD	346,969	1,400	CSI300	HK
Listed Index Fund China A Share (Panda) C	2008-04-11	10 units	3570	6,960	81	JPY	21,317	1,027	CSI300	Tokyo
db x-trackers FTSE/Xinhua China 25 ETF	2007-06-19	10 units	229.2	2,315	27	HKD	230	8	SE XINHUA CHINA 25	HK

- ◆ A 주 관련 Index 를 추종하는 ETF 는 총 7 개 (홍콩시장 6 개, 일본시장 1 개)
- ◆ 거래량이 적은 2 개의 ETF 를 제외하고 유동성이 있는 5 개의 ETF 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위 투자대상 ETF 는 예시목적으로 당사의 운용판단 및 증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CSI300 Sector Index 를 추종하는 다양한 Sector ETF 가 거래 중이므로 유망 섹터 ETF 를 일정범위 내에서 편입하여 초과수익을 추구

\* CSI300 인덱스란?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의 상장종목 중 대표적인 3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

나.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 (China A Share)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중국 본토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발생됩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축소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모투자신탁의 환헷지(하나 UBS 슈퍼차이나 A Share ET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또는 선물환 계약등을 통해 헷지 하며,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외화주식 포함. 이하 이호에서 같음) 투자금액의 90±10%를 목표로 헷지합니다. 다만,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환헷지를 하는 경우 환헷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위 펀드의 표시통화와 동 펀드에서 투자하는 유가증권 통화와의 차이로 인한



### 환위험은 존재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해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운용 도중 환율이 하락할 경우(원화절상)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원화절하) 환헷지로 인해 오히려 추가 이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본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손실위험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p>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이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p>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 각종 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이하 총칭 “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증권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b>재간접투자 위험</b>	<p>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자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p>
<b>환율변동에 따른 위험</b>	<p>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 또한 시장상황에 따른 대체통화(USD)를 활용한 헷지로 인한 환율변동관련위험은 남아있습니다.</p> <p>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의 주식 등의 성과를 추종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모 투자신탁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본토의 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주로 환위험을 회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추종할 수 있으나 중국본토의 통화와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유통국가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사건 등으로 인하여</p>

	<p>환율 관련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p> <p>※ 특정국가의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투자대상국가의 경우 대달러 환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관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완전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등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b>이자율 변동위험</b>	<p>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b>신용위험 및 부도위험</b>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이상(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p>
<b>파생상품투자 위험</b>	<p>파생상품(선물, 옵션에 등에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b>피투자집합투 자기구 투자위험</b>	<p>본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단일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모투자신탁의 손익에 연동되는 위험이 있습니다.</p> <p>또한 모투자신탁의 청산 시 자투자신탁 또한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국가위험</b>	<p>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u>중국 본토지역의 주식</u>(China A Share)등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유통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또한 각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p>

	부 정책적 변화에 따르는 위험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부족 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결여 등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운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손실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b>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b>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경우에 따라서는 소급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b>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b>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b>유동성 위험</b>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자금송환위험</b>	본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상장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투자대상 국가로부터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행위 또는 투자자산의 매매절차와 관련된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원금,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의 송환 관련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b>지수추적오차 (Tracking Error)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ETF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ETF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며, A share ETF의 경우, 보수 및 각종 비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Tracking Error 이외에도 A share 투자를 위한 QFII 의 제약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Tracking Error 가 발생합니다. 동 펀드 또한 CSI300 지수 및 XIN50 지수 등 중국 A주 시장을 추종하는 ETF 에 대부분 투자할 예정이지만, 지수를 추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Tracking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모자형 구조 위험</b>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채무증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 조절은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를 통하여 됩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채무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투자비중

	조절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할 위衾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되는 당일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모두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는 위衾이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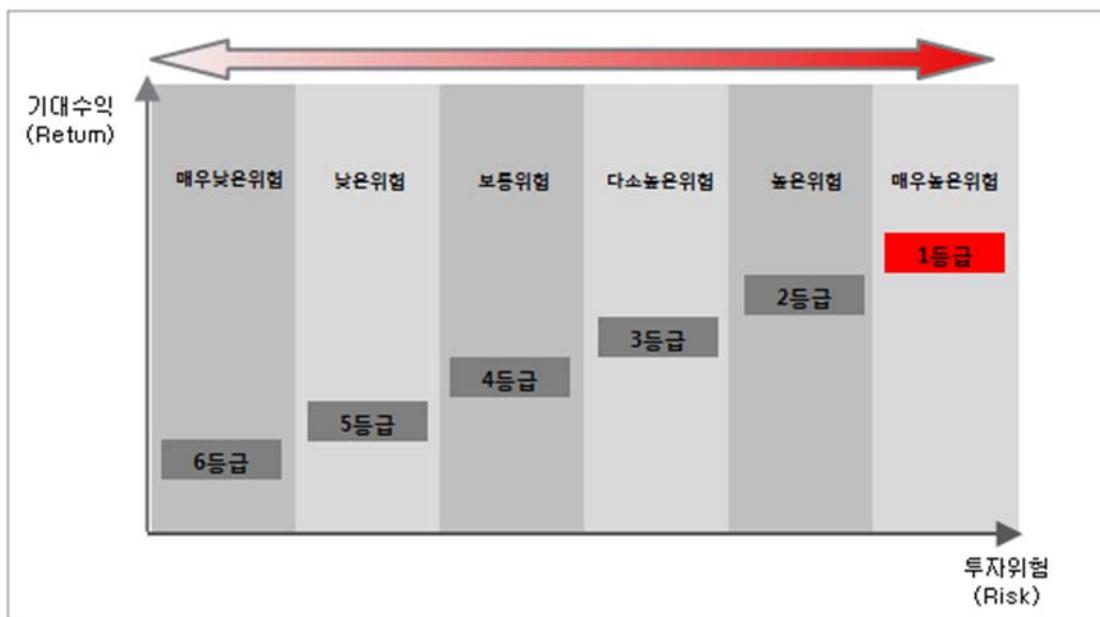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환매에 따른 위험</b>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b>상장폐지위험</b>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콩증권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의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상장 거래종목에 대해서 상장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ETF가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인 ETF가 매매중지 또는 상장될 경우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 기구의 거래상 대방위험</b>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본토A주의 성과를 추종하는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 등(이하'중국본토A주 관련 증권'이라 함)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본토A주 관련 증권은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 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회사가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투자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b>	1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자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b>오퍼레이션 위험</b>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로 인해 시장 개장 및 폐장 시간에도 시차가 발생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국내투자의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b>기타 위험</b>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연율화](#))]이 [25.38%](#)임에 따라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시장의 변화와 중국 본토주식등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및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b>11. 매입, 환매, 전환</b>	가. 매입
<b>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b>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종류 C-E	판매사 인터넷뱅킹(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가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7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T+8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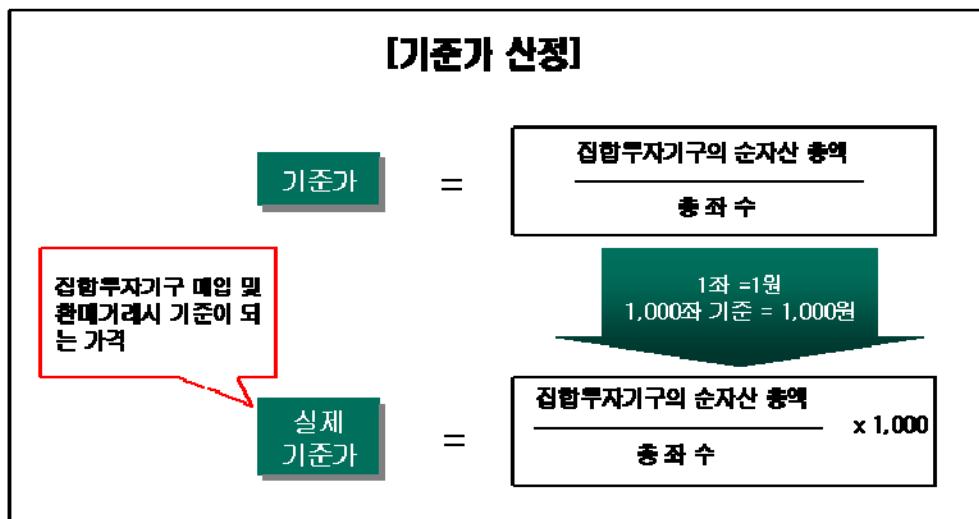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이전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12. 기준가격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 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 수수료 등 종류

	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 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인터넷홈페이지에 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 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 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중 낮은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및 C-E	종류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sup>(주)</sup>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	--	-----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S	
집합투자업자보수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600	1.500	1.250	0.950	0.900	1.000	0.350	
신탁업자보수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보수합계	1.270	2.170	1.920	1.620	1.570	1.670	1.020	
기타비용 <sup>주1)</sup>	0.027	0.025	0.032	0.025	-	0.027	-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sup>주2)</sup>	1.297	2.195	1.952	1.645	1.570	1.697	1.020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sup>주3)</sup>	2.297	3.195	2.952	2.645	2.570	2.697	2.020	
증권거래비용 <sup>주4)</sup>	0.005	0.005	0.006	0.011	0.004	0.005	0.000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4.11.1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와 Rebat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4.11.1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28,839	506,165	811,917	1,720,524
종류 C1	222,396	612,055	993,901	2,128,636
종류 C-E	171,152	539,558	945,726	2,152,738
종류 S	104,536	329,551	577,629	1,314,846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 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1년 이후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S 수익증권은 10년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14. 이익 배분      가.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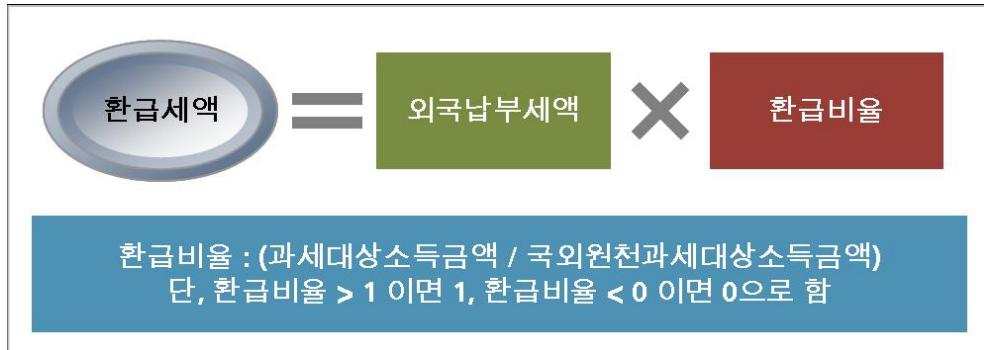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

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 (2011.11.11 – 2012.11.10)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 3 기 (2012.11.11 – 2013.11.10)	-	-
제 4 기(2013.11.11 - 2014.11.10)	-	-

주 1) 제 3 기의 경우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요약재무정보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4.11.10	2013.11.10	2012.11.10
운용자산	4,593,308,567	6,175,990,184	7,667,984,984
유가증권	4,549,638,441	6,113,075,055	7,593,441,202
현금 및 예치금	20,670,126	26,915,129	8,543,728
기타 운용자산	23,000,000	36,000,000	66,000,054
기타자산	29,061,719	332,640,198	33,991,356
자산총계	4,622,370,286	6,508,630,382	7,701,976,340
기타부채	13,638,096	309,112,745	5,130,040
부채총계	13,638,096	309,112,745	5,130,040
원본	6,263,690,544	8,830,637,633	11,000,154,130
이익조정금	-1,654,958,354	-2,631,119,996	-3,303,307,830
자본총계	4,608,732,190	6,199,517,637	7,696,846,300
운용수익	129,542,685	42,759,598	-1,069,459,107
이자수익	1,143,967	1,982,964	2,432,731
매매/평가차익(손)	128,227,772	39,330,405	-1,072,025,734
기타수익	170,946	1,446,229	133,896
운용비용	8,614	80,711	524,320
매매수수료	8,614	16,261	19,780
기타비용	0	64,450	504,540
당기순이익	129,534,071	42,678,887	-1,069,983,427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4.11.10	2013.11.10	2012.11.10
운용자산	4,593,308,567	6,175,990,184	7,667,984,984
현금 및 예치금	20,670,126	26,915,129	8,543,728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670,126	26,915,129	8,543,728
대출채권	23,000,000	36,000,000	66,000,054
콜론	23,000,000	36,000,000	66,000,054
유가증권	4,549,638,441	6,113,075,055	7,593,441,202
수익증권	4,549,638,441	6,113,075,055	7,593,441,202
기타자산	29,061,719	332,640,198	33,991,356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9,048,511	332,615,554	33,969,120
미수이자	13,208	24,644	22,236
자 산 총 계	4,622,370,286	6,508,630,382	7,701,976,340
기타부채	13,638,096	309,112,745	5,130,040
해지미지급금	13,637,983	309,111,360	4,744,776
수수료미지급금	113	1,385	342,354
기타미지급금	0	0	42,910
부 채 총 계	13,638,096	309,112,745	5,130,040
원 본	6,263,690,544	8,830,637,633	11,000,154,130
이익잉여금	-1,654,958,354	-2,631,119,996	-3,303,307,830
자 본 총 계	4,608,732,190	6,199,517,637	7,696,846,300
부채 및 자본 총계	4,622,370,286	6,508,630,382	7,701,976,340
총좌수 슈퍼차이나 AShareETF 자[주식-재간접형]	6,263,690,544	8,830,637,633	11,000,154,130
C/A	4,809,926,532	5,689,407,258	6,786,766,099
C/C1	11,224,445	211,194,300	162,601,309
C/C2	63,116,090	30,706,264	2,918,898,537
C/C3	24,283,834	1,886,247,320	0
C/C4	861,234,527	0	0
C/CE	360,008,207	459,472,006	655,183,893
C/S	1,499,925	0	0



기준가격 슈퍼차이나 AShareETF 자[주식-재간접형]	736	702	700
C/A	699	676	682
C/C1	1,000	657	669
C/C2	863	839	853
C/C3	1,000	986	0
C/C4	1,000	0	0
C/CE	688	668	676
C/S	1,000	0	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3.11.11 - 2014.11.10	2012.11.11 - 2013.11.10	2011.11.11 - 2012.11.10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129,542,685	42,759,598	-1,069,459,107
투자수익	1,314,913	3,424,047	2,566,530
이자수익	1,143,967	1,982,964	2,432,731
수수료수익	170,946	1,441,083	133,79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29,877,902	137,903,197	3,485,881
지분증권매매차익	13,738,324	137,903,197	3,485,881
지분증권평가차익	216,139,578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1,650,130	98,572,792	1,075,511,615
지분증권매매차손	101,650,130	39,016,258	77,522,257
지분증권평가차손	0	59,556,534	997,989,358
기타운용수익	0	5,146	97
운 용 비 용	8,614	80,711	524,320
매매수수료	8,614	16,261	19,780
기타운용비용	0	64,450	504,54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슈퍼차이나 AShareETF 자[주식- 재간접형]	129,534,071	42,678,887	-1,069,983,427
C/A	78,623,861	-40,346,567	-677,176,371
C/C1	-5,042,178	-6,283,689	-349,220,031



C/C2	496,779	26,722,907	-102,737,305
C/C3	-2,042,148	-37,305,708	0
C/C4	-16,626,205	0	0
C/CE	2,498,297	-14,765,737	-64,746,209
C/S	73,791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슈퍼차이나 AShareETF 자[주식- 재간접형]	17	4	-104
C/A	15	-6	-113
C/C1	-81	-30	-149
C/C2	5	110	-84
C/C3	-12	-18	0
C/C4	-13	0	0
C/CE	6	-25	-110
C/S	1,156	0	0

##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1/11/11~2012/11/10	9,997	8,038	6,115	4,458	5,112	3,729	11,000
2012/11/11~2013/11/10	11,000	7,697	5,725	4,145	7,894	5,685	8,831
2013/11/11~2014/11/10	8,831	6,200	3,151	2,195	5,718	3,915	6,264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1/11/11~2012/11/10	5,818	4,617	1,749	1,256	780	568	6,787
2012/11/11~2013/11/10	6,787	4,628	1,722	1,244	2,819	1,988	5,689
2013/11/11~2014/11/10	5,689	3,843	120	79	1,000	638	4,810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1/11/11~2012/11/10	3,832	3,013	383	285	4,053	2,840	163
2012/11/11~2013/11/10	163	109	295	221	247	185	211
2013/11/11~2014/11/10	211	139	18	18	218	139	11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1/11/11~2012/11/10	20	21	3,102	2,750	183	158	2,919
2012/11/11~2013/11/10	2,919	2,489	82	74	2,970	2,564	31
2013/11/11~2014/11/10	31	26	169	136	137	107	63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2/11/12~2013/11/10	1,067	1,070	2,495	2,523	609	625	1,886
2013/11/11~2014/11/10	1,886	1,860	43	40	1,905	1,873	24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3/11/11~2014/11/10	747	754	1,856	1,849	994	944	861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1/11/11~2012/11/10	474	375	276	205	95	71	655
2012/11/11~2013/11/10	655	443	122	87	318	208	459
2013/11/11~2014/11/10	459	307	109	70	209	132	360
하나HUBS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단위:백만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2014/04/22~2014/11/10	0	0	1	2	0	0	1

###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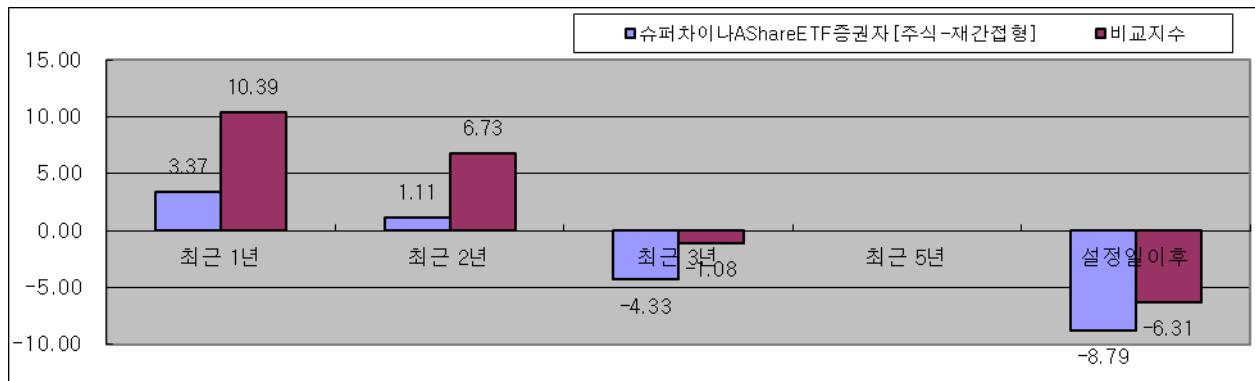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CSI300지수 \* 90%) + (Call 금리 X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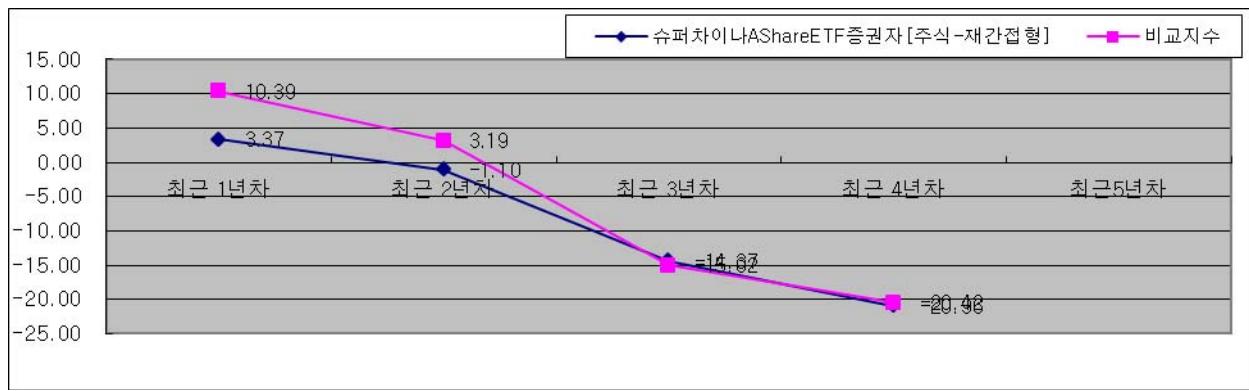
(기준일 : 2014년 11월 10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3/11/11~2014/11/10	2012/11/11~2014/11/10	2011/11/11~2014/11/10	2009/11/11~2014/11/10	(%)
슈퍼차이나AShareETF증권자 [주식-재간접형]	2010-11-11	3.37	1.11	-4.33		-8.79
비교지수	2010-11-11	10.39	6.73	-1.08		-6.31
ClassA	2010-11-11	3.49	1.26	-4.13		-8.55
ClassC1	2010-11-11	9.99	3.93	-2.75		-7.78
ClassC2	2011-11-11	2.85	0.60	-4.79		-4.79
ClassC3	2012-11-12	3.14				0.85
ClassC4	2013-11-11	3.19				3.19
ClassCE	2010-11-11	3.08	0.86	-4.51		-8.92
ClassS	2014-04-22					24.70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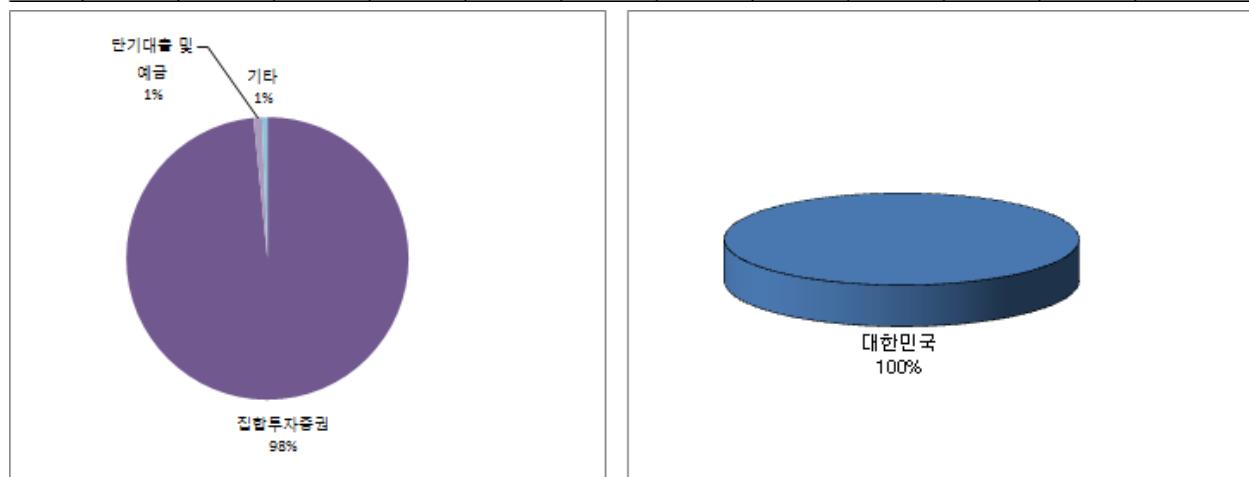
(기준일 : 2014년 11월 10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3/11/11~2014/11/10	2012/11/11~2013/11/10	2011/11/11~2012/11/10	2010/11/11~2011/11/10	2009/11/11~2010/11/10
슈퍼차이나 A Share ETF증권자 [주식-재간접형]	2010-11-11	3.37	-1.10	-14.37	-20.96	
비교지수	2010-11-11	10.39	3.19	-15.02	-20.42	
ClassA	2010-11-11	3.49	-0.92	-14.08	-20.64	
ClassC1	2010-11-11	9.99	-1.81	-14.85	-21.38	
ClassC2	2011-11-11	2.85	-1.61	-14.72		
ClassC3	2012-11-12	3.14				
ClassC4	2013-11-11	3.19				
ClassCE	2010-11-11	3.08	-1.31	-14.43	-20.96	
ClassS	2014-0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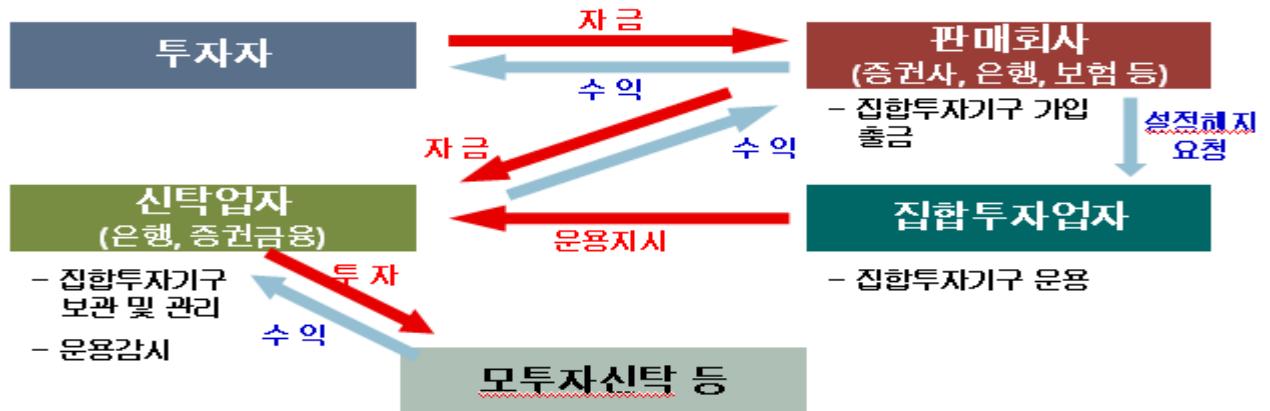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마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4,550	0	0	0	0	0	44	29	4,622
	(0,00)	(0,00)	(0,00)	(98.43)	(0,00)	(0,00)	(0,00)	(0,00)	(0,00)	(0.95)	(0.63)	(100,00)
자산합계	0	0	0	4,550	0	0	0	0	0	44	29	4,622
	(0,00)	(0,00)	(0,00)	(98.43)	(0,00)	(0,00)	(0,00)	(0,00)	(0,00)	(0.95)	(0.63)	(100,00)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02-3771-7800,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 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금융투자(주)

##### 나. 주요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5.12.31	'14.12.31	항 목	'15.12.31	'14.12.31
현금및예치금	62,946	61,356	영업수익	34,333	36,031
유가증권및대출채권	1,919	1,893	영업비용	18,867	20,035
유형자산및기타자산	10,376	11,830	영업이익	15,465	15,996
<b>자산총계</b>	<b>75,241</b>	<b>75,079</b>	영업외수익	78	15
기타부채등	4,448	5,099	영업외비용	148	142
<b>부채총계</b>	<b>4,448</b>	<b>5,099</b>	<b>경상이익</b>	<b>15,395</b>	<b>15,869</b>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0	435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25,313	24,545	법인세	3,427	3,572
<b>자본총계</b>	<b>70,793</b>	<b>69,980</b>	<b>당기순이익</b>	<b>11,968</b>	<b>12,297</b>

라. 운용자산규모(2016년 10월 31일 기준 / 단위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31,129	11,808	39,560	4,170	113,052	6,616	1,620	5,210	119	213,28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TEL : 02-2073-7114)
홈페이지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의무와 책임

### -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동길 43 (다동) (Tel : 6714-4615)
홈페이지	<a href="http://www.hanais.co.kr">www.hanais.co.kr</a>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 층 (02)2251-1300 - <a href="http://www.koreaap.com">http://www.koreaap.com</a>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NICE 피앤아이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여의도동) (02)398-3900 - <a href="http://www.nicepni.com/">http://www.nicepni.com/</a>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 층 (02)3215-1400 - <a href="http://www.bond.co.kr">http://www.bond.co.kr</a>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에프앤자산평가	(110-7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 층 (02) 721-5300 - <a href="http://www.fnpricing.com/">http://www.fnpricing.com/</a>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자본금: 50 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 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 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 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①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 <li>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li> <li>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li> </ol>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인 증개회사 평가를 통해 증개회사와 증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li> <li>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li> <li>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li> <li>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증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li> <li>5.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li> <li>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증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 (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li> </ol> <p>③ 증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증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증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li> <li>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li> <li>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